

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23가합30051 손해배상(자) [담당재판부:제2민사부]
원 고 최애숙 외 2명
피 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위원의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하여 강릉경찰서는 2023. 3. 20. 원고 최애숙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가 종결된 후에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보고서 등을 위원에 송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릉경찰서의 수사가 언제 종결될지는 불확실하고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급발진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이후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급발진사고 소송에서 피고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통상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보고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입수하여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미 원고들이 소장을 제출한 2023. 1. 10.로부터 70여일이나 지났는데, 향후 강릉경찰서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보고서가 송부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2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

강릉지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